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81th June 2015

- ▶ WHERE IS GRACE CHANG?:
MY WAY ♪
..... 2
- ▶ ABOUT WRITERS
..... 2
- ▶ COVER STORY:
S.O.S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는
어렵다!
..... 3
- ▶ FTA NEWS:
원산지 사전심사로 불안감 제거하세요
..... 5
- ▶ VOICES FROM THE FIELDS:
한민족의 조상과 유라시아(EURASIA)
..... 7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10
- ▶ CASE ANALYSIS OF CUSTOMS
VALUATION ㉠
..... 12
- ▶ TRADE NEWS
[글로벌 무역 동향] '2015 년 무역장벽
보고서'와 한국의 'TPP' 가입 전망
..... 14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장승희
대표 관세사

Frank Sinatra 라는 가수가 부른 'My Way'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삶의 긴 여정을 보내고 지나간 세월을 반추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일을 겪었고 다양한 길을 신나게 지나왔음을 얘기합니다. 후회가 되는 순간들도 있었으나 매 순간 나를 지키려 노력했고 나의 길을 충실히 갔다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각 사람마다 그의 길은 소중한 길입니다. 기업에도 또한 그들마다의 길이 있습니다. 'Toyota Way'가 있고, 'Lenovo Way' 도 있고..

지난주 그 중의 한 길을 베이징에서 보았습니다. 고객사인 Lenovo 의 Global Supplier Conference 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진행된 행사에 이어 두 번째 날에는 Lenovo Tech World 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China National Convention Center 에는 3,500 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04 년 중국의 작은 컴퓨터 조립회사가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기업 IBM PC 사업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역설적인 M&A 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10 년 후, 인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Motorola Mobility 와 IBM Server 사업부까지 인수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Perfect Time to Lead'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행사에서 Lenovo 는 세계 1 위를 향한 도전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Do what we say; own what we do'라는 모토의 Lenovo Way 를 따르며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직원들에게 기존의 방법 및 각자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배우고 인정하며 나아가자,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자 라는 Lenovo Way 입니다.

나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지요? 이번 호 Cover Story 는 까다롭지만 한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FTA News 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동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미국의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정리하였습니다. Voices from the Fields 는 성균관대학 신영석 교수의 글입니다. 한민족의 길(way)에 대하여, 우리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반추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My way, your way... and our way. 각각 다른 길인 듯싶지만 결국 길의 끝에서는 모두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걷고 계신 그 길에서 늘 행복하시고 충실함 가운데 보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S.O.S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는 어렵다!
원산지 사전심사로 불안감 제거하세요



권 선 아 관세사
(sakwo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컨설팅 본부 5팀
- FTA/AEO 컨설팅 전문
- 前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

FTA News-

원산지 사전심사로 불안감 제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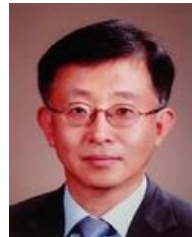
김 혜 란 관세사
(hr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컨설팅 본부 1팀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 원산지관리사

Voices From The Fields-

한민족의 조상과 유라시아(Eurasia)



신 영 석 교수
(yshin57@skku.edu)

PROFILE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산학협력전담교수
- 前 KB 투자증권 고문/부사장
- 前 삼성선물 상무
- 前 삼성증권 부장/상무(보)
- 前 BS 투자증권 고문
- 前 증권선물거래소 CIO 협의회 회원/상품개발 위원회 위원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유 입 세 관세사
(isyo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통관 및 환급컨설팅 전문

Case Analysis of

Customs Valuation ② 판매자가 부담하는 하자 보증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최 성 지 관세사
(sj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컨설팅 본부 1팀
- FTA 컨설팅
- 기업심사 자문

Trade News-

[글로벌 무역 동향] '2015년 무역장벽보고서'와 한국의 'TPP' 가입 전망



김 효 선 대리
(hs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컨설팅 본부 1팀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 원산지관리사

Cover
 Story

S.O.S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는 어렵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무엇인가를 떠올려보면, 기계의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물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HS 품목분류에서는 기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만을 부분품으로 지칭한다. 즉 기계의 구성에서 제외하여도 기계의 용도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구성요소는 부분품으로 보지 않는다. 어디까지를 기계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부분품 분류규정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의 부분품은 품목분류상 기계와 함께 분류하기도 하고 부분품만을 분류하는 특정호에 분류하기도 한다. 또는 기계의 일부를 구성하더라도 HS 품목분류상 부분품으로 보지 않기도 하는데,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품목분류에서 말하는 기계의 부분품의 범위, 부분품의 종류, 분류기준, 분류방법 등에 대하여 기업 수출입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 부분품의 정의

기계는 복잡해 보이나 세분해 보면 비교적 간단한 기계요소인 부품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 종류로는 ① 연결용 부품(나사·핀·리벳 등) ② 동력전달용 부품(회전축·마찰차(friction wheel)·기어·벨트·로프·체인 등과 같이 동력을 전하는 것) ③ 지지부품(미끄럼베어링·볼베어링·롤러베

어링 등과 같이 축을 지탱하는 부품) ④ 운동전달부품(레버·크랭크기구 등에 사용되는 링크(link) 또는 복잡한 운동을 전하는 캠 등의 부품)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브레이크·플라이휠·스프링·파이프·파이프 이음·밸브 등이 있다.

관세청 예규상의 "부분품"의 정의는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부속품"이란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으로 정의하여 "부분품"과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전거에 간단한 짐을 놓기 위한 바스켓(Basket)은 자전거의 기능에 부수적인 물품이므로 품목분류상 자전거의 부분품이 아니라 부속품으로 구분한다.

□ 부분품의 종류

품목분류에서 기계는 크게 전기식의 기계(85 류)와 비전기식의 각종의 기계(84 류), 90 류의 광학·측정·의료기기 등의 정밀기기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식의 기계가 85 류에 분류되지만, 84 류에 분류되는 전기식의 기계도 있으므로 품목분류 주의 규정과 호의 용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반면 기계의 부분품은 크게 범용성 부분품과 전용 부분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 독립된 기능에 따른 특계호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범용성부품과 전용부품

① 범용성 부품: 모든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품으로서 같은 규격에 한해서는 호환성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요소부품(ex: 베어링·기어·나사·볼트·너트·스프링 등)과 모든 기계 또는 기종에 공통성이 있으나 그 성질이나 특성이 기계별로 약간씩 다른 일반적인 범용성 부품(ex: 유압기기·링·실·펌프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전용부품: 각 기계별로 특수한 기능과 성질을 갖기 때문에 타 기계와는 전혀 호환성이 없는 부품을 말한다.

-특계(特掲)부품과 비특계부품

관세율표상 호(Heading)에서 부품 명칭을 1 개의 상품명 또는 상품군명으로 계기하고 있는 경우 그 부품을 특계부품이라 하며, 특계되어 있지 않은 부품을 비특계 부품이라 한다.

□ 부분품 분류원칙

-당해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

당해 기기에 조립되어 제시되는 경우 또는 미조립 분해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부분품이 아닌 당해 기기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여분으로 제시되거나 조립 후 남는 부분품은 당해기기와는 별도로 아래에 방법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부분품이 개별적으로 별도 제시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해 부분품이 사용되는 기기와는 별도로 부분품 분류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① 특계호 우선분류

모터(HS 8501), 펌프(HS 8413), 베어링(HS 8482)과 같이 대부분의 기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은 관세율표상 특계

호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최우선적으로 특계된 호에 분류하게 된다.

②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분류

특정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와 함께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 그리고 여러 호의 기계에 대한 부분품을 일괄하여 분류토록 되어 있는 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③ 기타 부분품의 분류

특정 호뿐만 아니라 다른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각종 부문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라면 비전기식의 것은 8487 호, 전기식의 것은 8548 호, 90 류의 정밀기계의 것은 9033 호에 분류된다.

품목분류는 관세율, 간이정액환급액, 감면대상, 적용법령, 원산지 등이 결정되는 관세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최근에는 IT 품목에 대한 관세율 적용과 FTA 협정의 일반화에 따른 원산지 판정(원산지 판정의 70%이상이 세번변경 기준) 업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있어서도 기계의 부분품의 품목분류가 쟁점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취급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관세청의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하거나, 가깝게는 관세행정의 전문가인 우리 신한관세법인으로 적극 문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한다. 신한관세법인 컨설팅본부는 고객사의 품목분류 분쟁에 조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법률안전요원들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권 선 아

(sakwon@customsservice.co.kr)

원산지 사전심사로 불안감 제거하세요

국내외 원산지 사후검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 수출품에 대한 외국 세관의 원산지 수출검증은 2011 년 기업수 기준 84 건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1~7 월) 194 건으로 늘었다. 국내 수입물품에 대한 우리나라 세관의 원산지 수입검증은 같은 기간 49 건에서 386 건으로 급증¹했다.

사후 검증의 급증하는 이 시점에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의문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이다.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란 FTA 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국내 수입자나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이들의 대리인이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하는 제도다.

사전심사 대상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은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거래계약서, 원가계산서, 공정명세서 등)를 관세평가분류원에 우편접수해야 하며, 일정 수수료(물품당 3 만원)가 발생한다. 신청 후 90 일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기간에 보정기간은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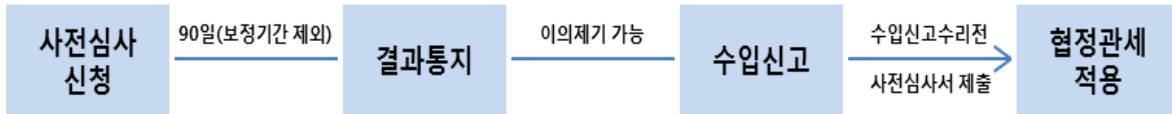
- 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 그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¹ 출처: 연합뉴스 'FTA 원산지 검증 소홀했다가 역대 추정금 문다' 2015.5.21

사전심사의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사전심사서를 반복 사용할 수 있다.

[사전심사 프로세스]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는 해당 신청이 수입신고 후에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된다. 또한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각 협정이 규정하는 바가 다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협정문을 확인해야 한다.

오류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적법성 및 직접 운송원칙의 오인 등 주로 절차상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수입자 등은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사후 검증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혜란
hrkim@customsservice.co.kr

FTA 협정국과의 교역에 있어 특혜관세 신청절차상

[FTA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규정	○	○	X	X	○	○	○	○	○	○	○
협정문	5.9 조	5.8 조	-	-	5.8 조	6.6 조	5.7 조	7.10 조	3.8 조	4.7 조	4.10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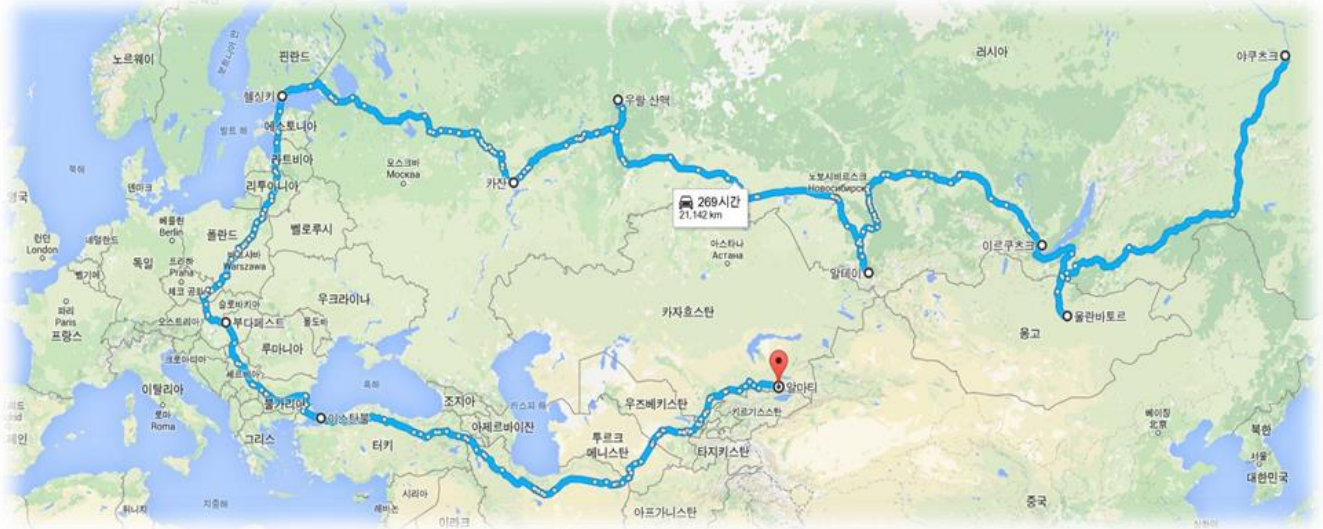
Voices From The Fields

한민족의 조상과 유라시아(Eurasia)

인터넷이 인류에게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한류로 지칭하는 세계적인 열풍도 인터넷이 빚어낸 현상 중 하나다. 한국인이 만든 뮤직비디오와 TV 드라마 비디오가 인터넷에 올려지면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매우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구슬픈 가락의 우리 노래를 한국말도 모르는 외국의 소년 소녀들이 Youtube 로 보고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놀랍고 의아하기까지 하다. 어찌하여 그들은 한국인들만 알고 즐기던 한국적인 것들에 열광할까?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왜 “한민족의 조상과 유라시아”라는 생소한 제목을 달아 놓고는 갑자기 인터넷과 한류 이야기부터 꺼냈는지?

이것도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열풍처럼 확산되는 하나의 한류이기 때문이다. 외국 청소년들에게 한류가 새로운 발견이라면 한국인들에게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초원지역을 무대로 살았던 한민족의 조상에 관한 역사 이야기 또한 놀라운 발견이다. 많은 재야 사학자들과 역사와 고고학을 취미로 하는 많은 “동호인”들 그리고 일부 전직 경제관료들까지 합세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한민족의 고대사를 새로 써 나가는 것은 마치 전통과 권위의 Britannica 백과사전이 아닌 Wikipedia 를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같이 써 나가고 있는 것과 많이 닮아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및 중공과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간의 냉전과 철의 장막은 한민족의 역사 되찾기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고 같은 조상으로부터 파생되었으나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한민족의 조상의 형제들 역시 그들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되찾지 못한 채 긴 시간이 흘렀다. 1980년대 초 중국



<그림> 한민족 조상과 이웃 민족의 이동 추정 경로

등소평의 개혁과 개방이 시작되고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면서 신생독립국가들이 새로 등장했고 한국인들과의 교류도 시작되었다. 정부차원의 수교도 맺어졌고 이제는 그 지역으로 여행이나 탐방도 갈 수 있고 기업체가 진출하여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전통문화가 한민족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타고 더욱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말이 우랄·알타이 어군(語群)에 속한다는 것부터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몇 가지 단편적인 사례들을 여기에 언급해 보려고 한다. 위의 지도는 관련된 지명들을 길 찾기로 연결하여 지도 위에 선을 그려 놓은 것으로 이런 경로를 따라 한민족의 조상과 그 이웃 민족들이 이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씨름, 윷놀이와 공기돌 놀이는 시베리아 전역과 중앙아시아에 걸쳐서 폭넓게 나타난다. 윷이나 공기돌을 다듬어진 동물의 뼈 조각 등으로 대체할 뿐 핵심적인 내용은 같다. 우리의 “단군”이 중앙아시아로 가면 “텡그리(Tengri)”가 된다. 꿈에 대한 신화도 대부분 같은 내용이고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도 나온다. 원시 알타이어로 영웅이란 뜻의 “바타르”가 우리 말의 ‘배달’이 되었다고 한다. 요즘에 와서는 신속하게 배달을 해 주는 사람이 영웅인 셈이다. “케레이”가 “겨레”와 같고

“고려(高麗)”란 국호도 그 소리만 음차(音借)되었다는 주장도 흥미롭다. 결국 Korea 라는 국명의 원래 의미는 “겨레” 또는 “민족”이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와 “아사달”, 그리고 심지어는 멕시코의 “아즈텍(Aztec)”이 같은 어원(語源)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도 놀랍다. 우리가 아는 “부여”가 터키어 “Büyük”과 발음이 유사하고 그 뜻은 Great 란 점도 눈에 띈다.

터키에서는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런데 우리는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왜 터키와 한국이 형제인지 모른다. 6·25 전쟁에서 지원군 파견규모가 3위였던 국가가 터키여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 한국인도 소수에 그친다. 그렇다면 파견규모 1위였던 미국은 왜 우리가 형제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친구의 나라(友邦)라고만 할까?

우리가 아는 돌궐족이 투르크족의 조상이고 오늘날의 터키는 그 투르크족의 후예다. 유럽을 광범위하게 지배했던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멸망한 후 그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Turkey 로 부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터키의 자국어 명칭은 Türkiye (투르키예)이다. 고구려 연개소문 장군이 수나라 양제와의 전쟁 당시 돌궐족에 사신을 보내어 서쪽을 치게 하여 전력을 분산시켜 대승을 거두었다. 고구려의 멸망과 돌궐제국의 멸망이 같은 시기란 점도 흥미롭다.

빙하기 이후 넓은 시베리아 초원지대에는 유목부족 연합체가 서로 교류하며 살았고 모두 같은 조상을 섬기고 건국신화를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조상을 우리는 환웅과 단군으로 기록했고 고조선이라 칭하였던 것이다.

러시아의 80 여개 자치공화국 중 “부리야티아”는 바이칼 호수 주변에 있다. 그들은 한국인들과 DNA 패턴이 가장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사하/야쿠티아”공화국 사람들은 가장 추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광물자원이 풍부해서 1인당 소득으로는 러시아내 행정단위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도 “아이구”라고 하고 추우면 “앗 추워”라고 말한다. 또 다른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인 “타타르스탄”은 수도가 러시아 3대 도시인 카잔이고 타타르인들의 집단거주 지역이다. 터키에서는 한국인들을 보면 ‘타타르인’ 이냐고 묻는 터키인들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고 한다. 헝가리의 마자르족(말갈족)들이나 핀란드 사람들도 몽고반점이 나타난다고 한다. 고구려 사람들을 과거에 “모구리”라고 불렀는데 “몽골”과 같은 말이란 주장도 있다.

Korea 라는 우리의 국명도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는 “겨레”를 연상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인터넷에 올려져 있어 누구나 검색해서 찾아 볼 수 있다. 역사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겠지만 Wikipedia 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점차 진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쌓여가는 중이다.

이렇게 한민족과 잠재적 유대관계가 많은 민족들이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산재해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우리와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한(漢)족이나 슬라브족 등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으나 아직도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 있고 경제발전 단계는 아직 낮으나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들 대부분이 한류에 열광하고 그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한국의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산가족 상봉에 버금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던 전통과 뿌리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한국문화를 만나면서 재발화된 것으로 본다. 한국이 6·25 전쟁의 역경을 딛고 잿더미 위에서 경제를 재건한 최근의 역사도 그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전해진다.

그들 모두 한국의 경제발전을 부러워한다. 그러면서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한국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한다. 한민족이 오래 전부터 간직하고 있었던 문화적 코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같은 조상의 후예들이 반응하는 신기한 현상이 한류를 탄생시키고 유지시켜 오고 있다.

그러나 막상 한민족의 본국인 대한민국은 성장동력이 약화되어 가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상태에 있으며 인구구조는 고령화되고 청년실업은 늘어만 가고 자살률도 세계적으로 너무 높은 형편에 처해 있다.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빨리” 찾아내야 한다.

이 시점에 우리 모두는 한민족의 조상들이 거쳐온 이주경로를 역추적하여 옛 선조들과 형제의 우애를 다졌던 또는 과거의 기록에 “오랑캐”로 묘사되었던 민족들의 후예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 주고 그들도 우리처럼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만들어 주는 것에서 우리도 함께 재도약하는 계기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광개토대왕의 고구려가 차지했던 드넓은 영토를 넘어서서 21 세기의 한민족이 더 넓은 경제적 영토를 다시 개척하고 건설하자는 얘기다.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은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쉽게 얻지 못한다. 오직 한국인들만이 그들의 오래된 형제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인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산학협력교수 신 영 석
(yshin57@skku.edu)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사유

○ 규제건의신문고 및 지자체 개선건의 과제로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출실적인정 범위에 '외국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보세구역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증명발급기관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함.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 등을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출실적 인정.

○ 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을 한국무역협 회장으로 지정.

로 지정.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 기존 2015년 7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던 제110조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

3. 시행일자 : 2015년 5월 18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사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제도 정비(안 제6조 제7항 및 제8항)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도를 정비함.

나. 관세청장의 원산지확인서 인정 제도 신설(안 제6조의3제4항 및 제5항)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완화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안 제7

조 및 제7조의2)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중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기간을 최근 5년간에서 최근 2년간으로 완화하고, 그 인증유효기간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기간을 각각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인증유효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는 사유로서 최근 5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최근 2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완화함.

라.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개정(안 별표 6)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가 개정되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HS 2007에서 HS 2012로 전환됨에 따라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HS 2012 기준에 따라 재분류함.

3. 시행일자 : 2015년 5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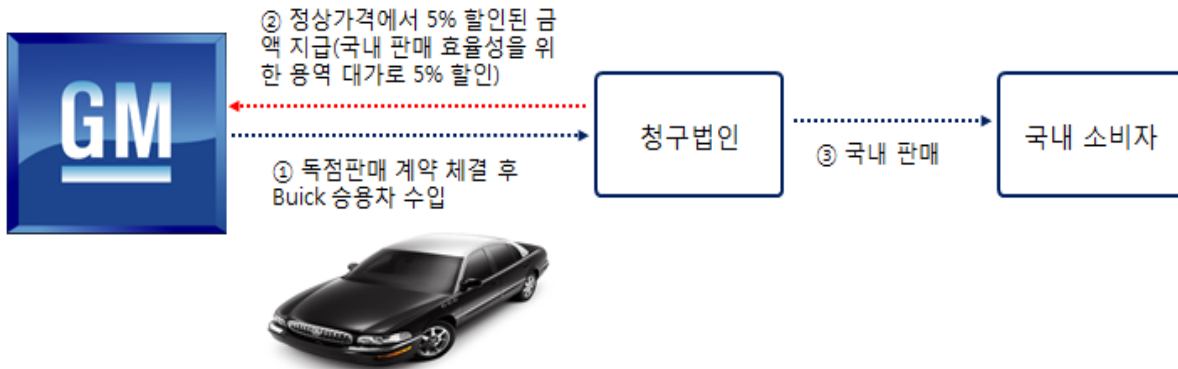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판매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증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서울고법, 93 구 7824)

I. 사실관계

1. 거래내용



청구법인은 국내판매 효율성을 위한 용역 대가로 정상가격에서 5% 할인된 금액을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지급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 쟁점사항

자동차(쟁점대상물품)를 수입하면서 자동차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수리보증 의무 등을 수입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가격을 일부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그 할인금액은 관세법 제 9 조의 3 제 1 항(현 관세법 제 30 조 제 1 항)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한다고 보아 정상거래가격에 할인금액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관세부과 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II. 결정내용

1. 부과처분 경위

청구법인은 GM 社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체결하였으며, 국내판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용역을 스스로 부담하고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5% 할인된 금액으로 수입대금을 지불하였다.

- 1) 판매할 자동차의 전시 및 그 전시장 건물의 설치, 판매망의 구축, 광고 및 판촉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2) 고객에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보증, 유지, 수리 등 판매 후의 유지관리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부과처분의 판결

본 처분은 고객에 대하여 부담할 보증수리의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대가로 정상거래가격의 5% 할인된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해당 할인금액은

- 1) 관세법 제 9 조의 3(현 관세법 제 30 조 제 1 항)
- 2) 관세법 시행령 제 3 조(현 관세법 제 30 조 제 2 항)

상기의 2-1), 2-2)에 의거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 3 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되어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실제 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Ⅲ. 처분에 대한 반론

1. 판매자에 의해 수행된 하자보증

- 1) 판매자가 직접 하자보증의무 수행

WCO 예해 20.1 에서는 “판매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이 귀속되는 경우 하자보증비용은 물품의 단위가격에 포함되거나 또는 물품대금과 별도로 송장에 기재할 지라도 해당 비용은 수출판매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로 고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판매자가 제 3 자에게 하자보증의무 양도
동 예해는 “판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 3 자에게 하자보증의무를 부담시키고 구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ex: 판매자가 하자보증 관련한 보험에 부보 하였으나 구매자에게 납입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증비용은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상기의 1-1), 1-2) 하자보증비용은 거래가격의 일부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다.

2. 구매자에 의해 수행된 하자보증

구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 하에 하자보증 의무를 감수하는 경우, 구매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증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IV. 결론

구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내 판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활동의 일환으로 하자보증비용을 부담하고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5%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실제지급가격으로 판단되므로 사례의 처분은 부당한 판결이다. 즉, 하자보증비용은 비용부담주체에 따라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성 지
(sjchoi@customsservice.co.kr)

Trade News

[글로벌 무역 동향]
 '2015년 무역장벽보고서'와
 한국의 'TPP' 가입 전망

한-일 재무장관회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참가국 각료회의 등 5월 한달 간 TPP 참여를 놓고 많은 회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지적한 화평법과 한국의 TPP 가입 승인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한다.

1. 미국과의 교역 현황

한국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2014년 전체 수출입실적에서 수출은 2위, 수입은 3위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미국과의 교역은 우리나라의 수출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역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對 한국 수출입실적

단위 천불(USD 1,000)

연도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출입격차
2007년	45,766,102	37,219,301	8,546,801
2008년	46,376,610	38,364,783	8,011,827
2009년	37,649,854	29,039,451	8,610,403
2010년	49,816,058	40,402,691	9,413,367
2011년	56,207,703	44,569,029	11,638,674
2012년	58,524,559	43,340,962	15,183,597
2013년	62,052,488	41,511,916	20,540,572
2014년	70,284,872	45,283,254	25,001,618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위의 통계에서 보여지듯이 미국의 수입금액과 수출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입격차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가 발표된 2012년을 기준으로 그 격차는 더욱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

2. '화평법'에 대한 무역장벽보고서의 평가

미국은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현재 화평법에서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 톤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화평법의 규제로 인해 민감한 기업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전에도 미국은 2013 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화평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바 있으며,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화평법 제정과 관련한 건의서한을 환경부에 보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규정에 따라 WTO 에서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3 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예정대로 시행하였다.

3. 한국의 TPP 가입 전망

현재 일본은 무역장벽으로 지적 받아온 쌀시장을 개방하면서 TPP 가입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TPP 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무역장벽으로 지목 받아온 화평법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실적부진으로 인해 미국 재계에서는 행정부에 TPP 와는 전혀 반대의 성격인 적극적인 수입 규제 조치를 발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은 TPP 협상의 선결 조건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 통과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어, 올해로 예정되었던 협정 타결은 기한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FTA 강대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가 TPP 에까지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한국의 참여 가능성은 없으며,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는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미국-일본의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대리 김 효 선

hskim@customsservice.co.kr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